#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610호 2025. 3. 31.(월)

입법	예고										
순천시	공고	제2025-	-818호					<sup>1</sup> 역에 관			
순천시	공고	제2025-	-869호	순천시	전통시	장 공영	주차장	설치 및	및 관리	• 운영	조례
		제2025-		순천시	고문변호	한사 운영	명 조례	일부개기	정조례인	- 입법여	]고 · 16
순천시	쑹고	제2025-	-884호	순천시 조례안	선비문 입법예.	화체험역 고	학습관 .	관리 및 	운영 🤄	조례 전	.무개정 ······ 27
순천시	공고	제2025-	-885호	순천시	향토유?	적 보호	. 관리어	]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5-	-66호 <del>(</del>	는천 도시	시계획시 기급 개최	설(도로	.)사업	시행자 :	지정(변	경) 고/	시 ··· 53
七선시	끄시	제2025-	-0/오 3 -	4시번 / 고시	/ 소생월 	[7] 심소	~8~F집(	(궁존엽)	악) 기년 ····································	폰계획 	공인 ······ 55
순천시	고시	제2025-	-69호 특	별량 상식	삼 마을	만들기시	나업(자	율개발)	기본계	획 및	시행
순천시	고시	제2025-	-70호 선	수취 도기	시계획시	설(전기	기공급설	범비) 경 <sup>*</sup>	미하 결	정(변경	병) 및
순천시	고시	제2025-	-72호 5	기정고 인 도로명주	소 고시		••••••	••••••	•••••		61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5-	-845호	순천 선 주민열림	성장관리 암 공고	계획구	역 지정	및 성	장관리)	계획 결	63
		제2025-	-864호	순천시	공인 등	록 및	폐기 공	7고		•••••	65
	유고	제2025-	-8/8오 	<del>ㅎㅎ</del> 하	<sub>┌</sub> 上 섬·	쌍어/トº <del></del>	게 반안 <del></del>	요고			68
회 람											

발행 : 순천시

홍보실 (☎ 749-5729, FAX 749-4625)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5-818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사업 시행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동(연향동 및 덕암동) 중첩 경계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효율적인 행정동(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별표 2 부칙(읍면동간 경계 조정) 오천동 다음에 "행정구역변경 지번 별 조서(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								
현재	의 행정구역 명	칭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디		
시・군・구	읍∙면∙동	리	MC.		(m²)	(m²)	<u> </u>		
순천시	연향동		1153-3	장	1,122	1,122			
순천시	연향동		1154-3	장	461	461			
순천시	연향동		1153-7	장	13	13			
	합 계		3필지			1,596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자치행정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swyang7@korea.kr (팩스) 061-749-4640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자치행정과(☎ 061-749-56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2 부칙(읍면동간 경계 조정) 오천동란 다음에"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순천시 연향동에서 덕암동으로 편입)								
현재의	의 행정구역 명	칭	지번	지목	총면적	이동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m²)	(m²)			
순천시	연향동		1153-3	장	1,122	1,122			
순천시	연향동		1154-3	장	461	461			
순천시	연향동		1153-7	장	13	13			
	합 계		3필지			1,596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HH T 이 버린/(	ᇜ도기	. 73 7	레고 zl \	<u> </u>		[用立(	2] 부칙	( <u>o</u> _	며도기	. 거っ	リスズ	`	
별표 2] 부칙(습		787	୩조정)							· ′ð ⁄·	11278	<u>,                                    </u>	
행정구역 변경 지번			o = =10	s.1.\		행정구역	ᅨ 변경 지			125	o = =	01)	
(순천시 오: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선동에서	남성동	으로 변1 <sub>총면적</sub>	<b>3)</b> 이동면적		혀재이	<b>(순천시</b> l 행정구역 명		동에서		<b>으로 펀</b> 총면적	( <b>입)</b> 이동면적	я
니·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m²)	(m²)	비고	시・군・구		。 리	지번	지목	(m²)	(m²)	' Н
순천시 오천동	860	대	324	324		순천시	오천동		860	대	32	4 32	24
: : :						:	:	:					
합계	2필지			350			합계		2필지			35	0
	<u>&lt;신</u> 석	절>						연호	지번빌 <sup>향동에서 9</sup>	_	으로 편입		
	<신 석	절>						연호	_	_	<b>으로 편입</b> 총면적	<b>))</b> 이동면적	비
	<u>&lt;신 </u>	<u>됨</u> >					( <b>순천시</b> 행정구역 명	연호	· 당동에서 <sup>(</sup>	덕암동 <u></u>	으로 편입		비
	<신 석	<u>설&gt;</u>				현재의	( <b>순천시</b> 행정구역 명	<b>연호</b> 칭	· 당동에서 <sup>(</sup>	덕암동 <u></u>	<b>으로 편입</b> 총면적	이동면적	비.
	<신 4	<u>철&gt;</u>				현재의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b>연호</b> 칭	<b>당동에서 5</b> 지번	<b>작암동</b> 지목	<b>으로 편입</b> 총면적 (m²)	이동면적 (m²)	
	<u>&lt;신</u> 석	설>				현재의 시·군·구 순천시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연향동	<b>연호</b> 칭	F <b>동에서 5</b> 지번 1153-3	지목 장	<b>혼로 편입</b> 총면적 (m²)	이동면적 (m²) 1,122 461	
	<신 4	<u>월</u> >				현재의 시·군·구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연향동 연향동	<b>연호</b> 칭	자번 1153-3 1154-3	지목 장 장	본로 편입       총면적 (m²)       1,122       461	이동면적 (m²) 1,122 461	
	<u>&lt;신</u> 석	<u>설</u> >				현재의 시·군·구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연향동 연향동	<b>연호</b> 칭	지번 1153-3 1154-3 1153-7	지목 장 장	본로 편입       총면적 (m²)       1,122       461	이동면적 (m²) 1,122 461 13	
	<u>&lt;신</u> 성	<u>별</u> >				현재의 시·군·구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연향동 연향동	<b>연호</b> 칭	지번 1153-3 1154-3 1153-7	지목 장 장	본로 편입       총면적 (m²)       1,122       461	이동면적 (m²) 1,122 461 13	
	<신 4	<u>월</u> >				현재의 시·군·구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행정구역 명 읍·면·동 연향동 연향동	<b>연호</b> 칭	지번 1153-3 1154-3 1153-7	지목 장 장	본로 편입       총면적 (m²)       1,122       461	이동면적 (m²) 1,122 461 13	

순천시 공고 제2025-81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O 2025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별표 2] 덕연동 관할구역: 2개통 6개반 신설
  -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 81통 ~ 82통(신설)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자치행정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swyang7@korea.kr (팩스) 061-749-4640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자치행정과(☎ 061-749-56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덕연동 80통란 다음에 81통란부터 82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덕연동	81	1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 101동
760		2	102동
		3	103동
	82	1	104동, 상가동
	2		105동
		3	106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105동</u>

<u>106동</u>

# 신 · 구 조무 대비표

			선• 1 조	证	们们五	•	
		현	행			개 기	텅 안
[별표	2]			[별표	2]		
7	지역 통	통반의 명	병칭 및 관할구역	<u> </u>	지역 부	통반의 또	명칭 및 관할구역
	ı	ı				T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ı	ı	ı	i	i	ı	i	i
덕연동	80통	제2반	현행과 같음	덕연동	80통	제2반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lt;신설&gt;</u>	<u>&lt;신설&gt;</u>		<u>81통</u>	<u>제1반</u>	<u>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 101동</u>
						<u>제2반</u>	<u>102동</u>
						<u>제3반</u>	<u>103동</u>
	<u>&lt;신설&gt;</u>	<u>&lt;신설&gt;</u>	<신설>		<u>82통</u>	<u>제1반</u>	<u>104동, 상가동</u>

<u>제2반</u>

<u>제3반</u>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사시합기 네중	찬	성	반	대	7	선 	H  1/

순천시 공고 제2025-869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일반 공영주차장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O (안 제7조 2항)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정비(별표2 삭제)
  - (현행)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 (변경)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요금과 같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junbu79@korea.kr (팩스) 061-749-4629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경제진흥과(☎
   061-749-5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한 요금과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햇

개 정 안

제7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

금) ① (생략)

② <u>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u> 와 같다.

③ (생략)

[별표 2]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조제2항 관 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시간	2시간 2시간 1일 월정기 주차권							
까지	초과시	주차			주•야			
(1구획당	매30분당	요	주간	야간	강			
)	(1구획당)	금			٦.			
무료	50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90,000원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 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2.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 가.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후 매 30 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 우 초과시간이 30분에 미달하여도 30분으로 산정한 다.
  - 나. 주차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 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다. 주차권이 없을 경우 주차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 징수한다.
  - 라. 장날 상인차량에 대하여 물건하역에 따른 무료 추 가시간을 상인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4.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 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순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요금과 같다.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O 연 락 처 :

ગેરોમો 7. નો વ		찬성	여부		ما	74	ы ¬
자치법규 내용	찬	성	반	대	의	견	비고

순천시 공고 제2025-879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늘려 연속성,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O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 및 업무수행 장려를 위해 규정 신설

# 2. 주요 내용

-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
  - (현행) 임기 1년, 연임 2회(총3년) (변경) 임기 2년, 연임 2회(총6년)
- O (안 제10조) 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규정 신설
  - (결정방법)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1,00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1.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 2. 형사소송 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3. 출석답변, 자료제출, 소명, 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16조 및 제18조
-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 (지원비용반납)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죄, 패소 확정된 경우 등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mjk2546@korea.kr (팩스) 061-749-4619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예산과(☎ 061-749-5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등"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청원경찰,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서 순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1. 고소 · 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 2. 형사소송 · 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 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 4.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 ②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진행상황을 송무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 3.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 등이 부담한다)
  -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 민사사건 등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 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 6.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 7.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 8. 다른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b> 순	■ 순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진 행 상 황							
사	건 <del>-</del>	구 :	₽.	□ 수 사 기 관 2	도사			□ 형 사 소 송
	_		_	□ 민 사 사 건				□ 감 사 원
사	건	<u> 번</u>	호		사	건	명	
원		-	고		피		고	
진	행 ^	사	ांच्या १					
첨		<u>. t</u>	7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③ ----- **2년**----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 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순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2조(위촉 등)** ①·② (생 략) **제2조(위촉 등)** ①·② (현행과 같

정 안

개

음)

제10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 원)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전 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청원경찰, 「순천시 공무직근로 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 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 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범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 한다)에서 순천시 소송심의위원 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변호비 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

현 행	개 정 안
	<u>정할 수 있다.</u>
	1.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민사사건의 당사
	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
	칙」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소명ㆍ
	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률상
	<u>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u>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
	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
	진행상황을 송무담당 부서에 보
	<u>고하여야 한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전액 반
	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비용
	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 또는 부서장의
	·

<u>=</u> J =N	7i) 7i Ol
현 행 	개 정 안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
	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
	<u> 우</u>
	3.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
	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해
	당 공무원 등이 부담한다)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
	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 민사사건 등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
	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u>상당을 반납한다)</u>
	6.「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지
	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l	

	T.					
현 행	개 정 안					
	7.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					
	· 한다)					
	8. 다른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 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지					
	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상 당을 반납한다)					
<u>제10조·제11조</u> (생 략)	<u>제11조·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 11 23 ×	제11조와 같음)					
<u>&lt;신 설&gt;</u>	■ 순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진 행 상 황					
	□ 수 사 기 관 조 사 □ 형 사 소 송 사 건					
	구 분 □ 만 사 사 건 □ 감 사 원					
	사 건 번 호 명					
	원 고 피 고					
	진 행     상 황					
	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ol		74	нl ¬
	찬	성	반	대	의 견	선 	비고	

순천시 공고 제2025-884호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O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 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O (안 제1조) 조례 개정 목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문화유산 시설의 용어에 관한 사항
- O (안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별표 1
- O (안 제5조)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별표 2
- O (안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국가유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hbliss@korea.kr (팩스) 061-749-4166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국가유산과(☎ 061-749-38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
  - 나.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 2. "사용료 등"이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 운영) ① 시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 개관 및 휴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시장은 시설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청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 3. 그 밖에 시설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유산 행사를 개최할 때
  -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화유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2장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관리 운영

제14조(기능) 학습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습장 자료의 수집 · 전시 및 관람업무
-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 3. 그 밖에 학습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관람료) 학습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학습장에서 흡연. 취사 행위
  - 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
  -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 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
  - 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학습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 원봉사자를 모집 · 운용할 수 있다.

- 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전시물의 취득) 학습장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 제19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 2. 학습장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20조(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 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학습장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전시물의 열람 등)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열람,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장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제22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 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제23조(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학습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28조(교육비용)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 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강사위촉)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시설명	위치	비고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순천시 해룡면 쟁골길 2(신성리 482)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순천시 금곡길 51(금곡동)	

## [별표 2]

#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개관 및 휴관 시간(제5조 관련)

시설명	개 관	휴 관	비고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ul> <li>평상시: 10:00~17:00</li> <li>동절기: 10:30~16:30</li> <li>(당해 11월~다음해 2 월)</li> </ul>	<ul> <li>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li> <li>일요일</li> <li>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li> </ul>	
선비문화체험학습관	• 평상시 : 09:00~18:00	<ul> <li>토요일, 일요일, 공휴일</li> <li>(다만,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제외한다.)</li> <li>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li> </ul>	

[별표 3]

##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入	· - - - - - - - - - - - - - - - - - - -	사용료	비 고
			오?	전(2시간)	20,000	
		- 다목적실	호-	후(4시간)	40,000	• 사용료는 30분당 5,000원, - 시간당 10,000원 기준
		(58 m²)	10]	(6시간)	60,000	(수용인원은 20명이내) • 사용기준 시간
	학 습		1일-	(6시간30분)	65,000	- 오전 : 10:00~12:00 - 오후 : 13:00~17:00 (동절기 16:30까지)
	장 시 설		오전(2시간)		20,000	-1일:10:00∼17:00 단, 점심시간은 제외
정유재란역사 체험학습장	1 日刊		오후(4시간)		40,000	<ul><li>(동절기 16:30까지)</li><li>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것</li></ul>
				(6시간)	60,000	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 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 동절기(당해 11월 ~ 다음해 2월)
			1일	(6시간30분	65,000	
	자	정보검색 출력		A4 1매	100	<ul><li>자료출력 및 복사는 흑백 기준임.</li><li>칼라는 1매당 200원</li></ul>
	료	자료복사	A4 1매		100	• A4 초과 용지 금액은 A4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선비학당(1) *강당(40명) 선비학당(2) *강의실(15명)		1회		30,000	•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1회		20,000	•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별지 제1호 서식]

##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	월일		
(단 체)	주소						
사용목적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릴 일	시 ~	년	월 일	] 시	
사용인원	( )명						
사 용 시 요구사항							
사용장소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순천시 문화유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중단	당 초
내 용	변경사항

위와 같이 당초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변경, 취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순천	시 문화유	산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계좌번호			(	은행)
반환금액	급	원		
취소사유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 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공고 제2025-885호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O 상위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간 불일치 제명 등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제3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향토유적"을 "향토유산"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31. ~ 2025. 4. 20.(20일간)

#### 4. 의견 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국가유산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hbliss@korea.kr (팩스) 061-749-4166

#### 5.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국가유산과(☎ 061-749-38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제3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향토유적"을 "향토유산"로 한다.

제2조제2호, 제8조, 제16조제1항 단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유적"을 "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순천시향토유적"을 "순천시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를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유산과장"을 "국가 유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유적보존"을 "유산보존"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순천시 향토유산 보호 관리에 조례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제1조(목적)** ----------- **향토유산**을 보호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 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향토유산** -----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u>향토유</u> 제2조(정의) ----- -<u>향토유</u> **적**"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산**-----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제3조(향토유산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수립) -----한다)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 ----- 향토유산의 체계 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 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 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을 매 | 천시 **향토유산** -----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한 기 1. 향토유산 -----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2. **향토유산** ------

현 행	개 정 안
사항	
3. 기타 <u>향토유적</u> 보호 관리에 필	3 <u>향토유산</u>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u>순천시향토유적</u>	순천시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b>.</b>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4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u>13</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1
의원 <u>3인</u>	<u>1인</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 및 <u>향토유적</u> 관련 분	3 <u>향토유산</u>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	6
을 두되 간사는 <u>문화유산과장</u> 이	<u>국가유산과장</u>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이	
된다.	<b>.</b>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	제7조(심의사항)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향토유적</u> 의 지정과 해제	1. <u>향토유산</u>

현 행	개 정 안
2. <u>향토유적</u> 보호구역(이하 "보호	2. <u>향토유산</u>
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u>향토유적</u> 의 환경보전에 관한	3. <u>향토유산</u>
사항	
4. <u>향토유적</u> 의 집중관리에 관한	4. <u>향토유산</u>
사항	
5. <u>향토유적</u> 및 보호구역의 보호	5. <u>향토유산</u>
에 관한 사항	
6. 기타 <u>향토유적</u> 의 보존관리에	6 <u>향토유산</u>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	
항	
제8조(지정기준) <u>향토유적</u> 은 다음	제8조(지정기준) <u>향토유산</u>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유적</u> 으로 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유산</u>
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1
있는 <u>유적</u>	<u>유산</u>
2. 보호 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2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	
한 <u>유적</u>	<u>유산</u>
제9조( <u>향토유적</u> 지정) 시장은 제2	제9조( <u>향토유산</u> 지정 <u>)</u>
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	
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등 중	
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향토유적</u> 으로 지정한	<u>향토유산</u>
다.	_
제10조(보호구역지정) ① 시장은	제10조(보호구역지정) ①

개 정 안
<u>향토유산</u>
2
<u></u> <u>ই</u>
<u>토유산</u>
제11조(고시) ① <u>향토유산</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u>향토유산</u>
② <u>향토유산</u>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u>향</u>
<u>토유산</u>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리.통장,
<u>향토유산</u>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를 <u>향토유산</u>
② 유산은 유
산소재지

현 행	개 정 안
로 지정한다.	
제14조(보존관리) <u>향토유적</u> 을 보존	제14조(보존관리) <u>향토유산</u>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u>향토유적</u> 을 원형이	1 <u>향토유산</u>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	
야 한다.	
2.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	2
하여 <u>향토유적</u> 의 지정 현황과	<u>향토유산</u>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	
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u>향토유적</u> 과 보호구역 토지는	3. <u>향토유산</u>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순	
천시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	
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u>향토유적</u> 의 주변 건축 및 토지	4. <u>향토유산</u> 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장은 <u>유적보존</u> 문제를 사전 검	시장은 <u>유산보존</u>
토하여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점검) ① 시장은 <u>향토유적</u>	제15조(점검) ① <u>향토유산</u> -
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비보조등) ① 향토유적 지 및 보호구역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 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7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 저 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할 수 있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 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 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 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록작성보관) ① 시장은 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계도등) ① 시장은 <u>향토유</u> 지 적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 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 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 성 안
제16조(경비보조등) ① <u>향토유산</u>
및 보호구역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
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u>유산</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집중관리) ①
<u>향토유산</u>
② <u>향토유산</u> -
제18조(기록작성보관) ①
<u>향토유산</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계도등) ① <u>향토유산</u>

a :

② 시장은 <u>향토유적</u>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유적)

지 정 서

위 치:

명 칭: 수 량:

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월일	<b>유적</b> 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b>요 적</b> 지정내 역					
					(	생		략	)

#### [별지 제3호서식]

○ 안내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유적**의 성격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화하되, 통상적인 것은 규격에 의한다.

개 정 안

② ---- 향토유사 --

<u> </u>	
 	- – –

[별지 제1호 서식]

#### (유산)

지 정 서

위 치: 명 칭:

수 량:

위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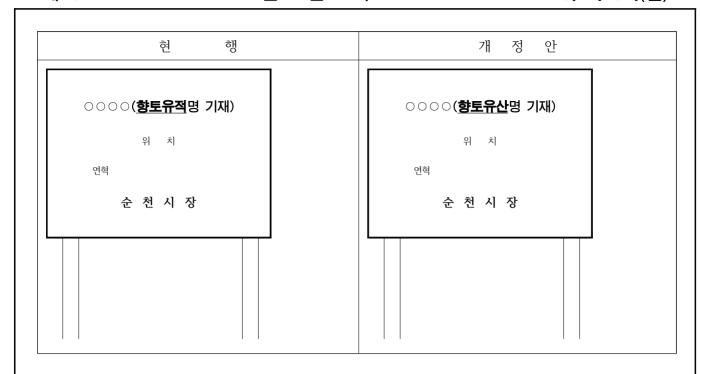
#### [별지 제2호 서식]

○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월일	<b>유산</b> 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b>유 산</b> 지정내 역					
					(	생		략	)

#### [별지 제3호서식]

○ 안내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유산**의 성격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화하되, 통상적인 것은 규격에 의한다.



고

순천시 고시 제2025-66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순천시 덕암동 87-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덕암동 87-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순천 도시계획시설(중로3-39호, 소로1-460호) (당초)

순천 도시계획시설(소로1-460호 외2) (변경)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소로1-460호 : 1,113 m²(L=104.0m, B=10m) (당초)

소로1-460호: 1,102m²(L=104.0m, B=10m) (변경)

순 천 시 보 2025. 3. 31.(월)

제1610호

나. 중로3-39호 : 549m²(L=41.0m, B=12m) (당초)

중로3-39호 : 550.7m²(L=41.0m, B=12m) (변경)

다. 중로2-9호 : 도로정비 A=5,743㎡, 신설 A=97㎡(B=1m,

L=118m) (변경)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당 초	그린웰산업(주) 김명종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 3층(농성동)
변 경	그린웰산업(주) 정인성	변경없음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7. 3. 31.(변경)

순천시 고시 제2025-67호

# 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기본계획 승인 고시

순천시 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 존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외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 2. 사업의 목적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 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SOC시설과 연 계.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주변 배후마을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3.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1,800)
- 4.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 5. 사업의 내용
  -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일원
  - 사업내용
    - (H/W) 외서커뮤니티센터(구 승남중외서분교장) 리모델링
    - (S/W) 지역역량강화사업(지속가능한 외서 자립프로젝트, 365응 급의료 복지 서비스. 행복문화 1번지 프로그램 등)
  - ※ 기본계획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 위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 광양 여수지사
-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 8. 기타 문의사항: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9)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 남지역본부(062-958-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5-69호

## 별량 상삼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별량 상삼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별량 상삼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 2. 사업의 목적

○ 상삼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마을 발전을 모색함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상삼마을 일원
- 면 적: 966,435m<sup>2</sup>
- 가구 및 인구 : 53가구 / 105명
- 주요 사업내용
  - H/W : 마을 진입로·안길 정비, 노후 담장 정비, 마을공원 조성

- S/W : 지역역량강화교육(주민 화합 및 건강교실, 마을 전통 계승 교육 등)
- 4. 사업비: 500백만원(시비)
- 5.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6. 사업의 효과

- 상삼마을의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
-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5-70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경미한 결정(변경) 건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 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최 초		
구분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면적(m²)	결정일	비고
기정	13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주암면 문길리 산35-5	주암면 요곡리 산47-53	_	2,484	2009.3.27. (전라남도고시 제2009-127호)	_
변경	13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주암면 문길리 산35-5	주암면 요곡리 산47-53	_	2,456		_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송전선로	○ 면적 : 2,484 m² → 2,456 m²	○ 국도27호선(벌교-주암)확장 공사에 따른 송전선로 이설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순천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5-7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수길 42외 12건 (신규 11. 폐지 2)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sup>※</sup>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조서

										Γ	r	-	
디미												철거 후 신축	遊 <mark>거</mark> 수 산축
도로명 부여사유	자연마을인 원가곡마을의 진입 노선으 로 이를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양율교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를 인 용 도로명 부여	육영사업가 김종익선생의 숭고한 정신 을 기리기 위해 아호 인용 도로명 부여	자연마을 당산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 용 도로명 부여	자연마을 비촌의 진입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자연지명 안골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 용 도로명 부여	자연마을 금성에서 오림간 노선으로 각 지명의 첫자를 인용 도로명 부여	선산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의 길로서 부여	선산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의 길로서 부여	57907 자연마을 구수를 인용 도로명 부여	해룡산단 내 도로로 산단명칭 인용 도 로명 부여		
우퍤번호	57957	57957	21987	57904	27900	95629	58019	57910	57911	57907	57985	28629	57957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20250331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원가곡길 31 (가곡동)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9-6 (교 량동)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91-1 (남정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당산 길 83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1길 11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안골길 311	전라남도 순천시 금오길 131-113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선산길 124-1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선산길 124-12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수길 4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 단6로 75		
총전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1034-7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065-10,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1065-9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486-2, 산1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21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1078-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 597-1, 597-2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155-3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97-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97-1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 56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681-1, 681-3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91-1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9-6
과시사교	생물년 무역	=	E	=	=	=	ш	ш	п			건물번호 폐지	=
B	-	2	က	4	2	9	7	∞	6	9	Ξ	12	13

卫

순천시 공고 제2025-845호

# 순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악) 주민열람 공고

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0조의13제1항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개요

○ 목적 : 비시가화지역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관리방안 마련

O 위치: 순천시 11개 읍면

O 면적: 약 63.9km²

#### 2.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내용 ※ 세부사항은 열람도서 참조

가. 현행 유지형(계획관리지역에 한함)

O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

-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도시계획조 례, 를 따름
- 나. 특정용도 제한형 <별량면, 해룡면 해안선(지적경계선)에서 이격거리 500m 구간>
  -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
  - 허용용도: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5.발전시설, 그 외 사항은 「순천 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도시계획조 례, 를 따름

####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3. 31. ~ 4. 14.(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061-749-6314)

## 4. 주민 의견제출

-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계획과(☎ 061-749-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공고 제2025-864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순천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 1. 공인 등록 및 폐기일: 2025. 4. 1.
- 2. 공인 최초 사용일: 2025. 4. 1.
- 3.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공인 노후화
-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붙임 1과 같음
- 5. 폐기 공인명 및 인영: 붙임 2와 같음

## <붙임 1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 신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규격 및 글씨체 (단위: cm)	인영	비고
1	순천시예산실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단진] [연고] [연고] [연고] [연고] [연고] [연고] [연고] [연고	
2	순천시예산과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1.8×1.8)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ව ව ව ව ව ව ව	
3	순천시덕연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1×2.1)	문진시 등장인 만원사무전용	
4	순천시장인 덕연동민원용	훈민정음체 (2.4×2.4)	수 전 시장인 덕연동민원용	
5	순천시풍덕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3×2.3)	순천시풍 덕동장인 <sup>민원사무전용</sup>	
6	순천시중앙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3×2.3)	순천시중 <u>앙동장인</u> <sup>민원사무전용</sup>	

## <붙임 2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규격 및 글씨체 (단위: cm)	인영	비고
1	순천시예산실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ではいる。	
2	덕연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3	순천시장인 덕연동민원용	한글전서체 (2.3×2.3)		
4	순천시풍덕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3×2.3)	스치시공 독통장인 민원사무진용	
5	순천시중앙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3×2.3)	소설시구 당동장인 민원사무전문	

순천시 공고 제2025-878호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하수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 순 천 시 장

점용자의 성명 주소	주식회사 순천그린바이오 대표이사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5, 2층 202호)				
점용목적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점용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624-1 외 7필지 (열병합발전시설동 포함)				
점용면적	402.77 m²				
점용기간	2025. 4. 1.부터 2030. 3. 31.까지				
공사실시의방법	점용자 시행				
공사기간	2025. 4. 1.부터 2025. 6. 30.까지				
기타사항					